

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2768
----------	------

김재진 의원 (국민의힘, 영등포1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재진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안전관리 조직 구성, 안전점검 방법 및 주기, 재난사고 조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할 사항을 규정(안 제8조제2항)하였으며,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(안 제8조제3항)하도록 하였습니다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